

사직 전공의 복귀 지원대책 발표

- 수련환경 개선 국가지원 확대, 수평위 기능·역할 및 독립성 강화
- 사직 전 근무한 병원 및 과목에서 수련 재개 가능, 군 입영 유예 추진

보건복지부(장관 조규홍)는 의료계 현장의 건의 사항을 적극 수용하여 사직 전공의가 복귀하여 정상적으로 수련을 이어나갈 수 있도록 최대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.

먼저, 전공의 수련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수련수당 확대 등 전공의 수련에 대한 국가지원을 대폭 확대*하고, 근무시간 단축 시범사업(주당 근무 : 80시간 → 72시간)을 추진할 계획이다.

* 2025년 지도전문의 지원 등 전공의 수련환경 혁신 예산 신설(2,332억 원), 전공의(1개 과목 → 8개 과목) 및 전임의(1개 분야 → 2개 분야) 수련수당 지원(415억 원)

이와 함께, 보건복지부는 현재 전공의 수련환경 평가 등을 담당하고 있는 수련환경평가위원회의 기능과 역할, 독립성 강화 방안 등에 대해 의료계와 적극적으로 협의해 나가겠다고 밝혔다.

* 현재 의사단체 추천 3명(전공의 2명 포함), 의학회 추천 3명, 병원단체 추천 3명, 전문가 5명, 공무원 1명 등 15명으로 구성

한편, 대한의학회, 한국의과대학·의학전문대학원협회, 대한수련병원협의회, 상급종합병원협의회, 국립대학병원협회, 대한사립대학병원협회 등 6개 단체는 지난 1월 6일 사직 전공의 수련 복귀를 위한 임용지원 특례 및 입영특례를 건의한 바 있다.

오늘 진행된 사회분야 2025년 업무계획 보고에서도 대통령 권한대행께서 전공의 복귀를 위한 조치 검토를 관계부처에 지시한 바 있으며, 여당에서도 수련특례와 입영 연기를 적극 검토할 것을 정부에 요청하였다.

이에 따라 보건복지부는 수련 재개를 원하는 사직 전공의 복귀를 위해 2025년 1~2월 전공의 모집계획에 수련 및 입영특례 방안을 적용할 계획이다.

현행 전공의 임용시험 관련 규정은 사직 후 1년 내 복귀를 제한하고 있으나, 사직 전에 수련한 병원 및 전문과목으로 복귀하여 수련을 재개하는 경우 수련특례 조치를 통해 이러한 규정을 적용하지 않을 계획이다.

아울러, 국방부, 병무청과 협의하여 사직한 의무사관후보생이 수련에 복귀하여 수련을 재개하면 수련을 마친 후 의무장교 등으로 입영할 수 있도록 최대한 조치할 예정이다.

* 의무사관후보생이 수련기관에서 퇴직한 경우, 원칙적으로 입영
(병역법 시행령 제120조 제1항, 제3항)

사직 전공의 모집은 1월 14일(화) 레지던트 모집 공고를 시작으로 1~2월 중 진행될 예정이다.

담당 부서	보건의료정책관 의료인력정책과	책임자	과 장	방영식 (044-202-2430)
		담당자	사무관	박영운 (044-202-2444)
			사무관	최단비 (044-202-2435)



<붙임> 질의응답

1. 수련 및 입영특례 적용 대상 및 자격은?

- '24년 사직 또는 임용포기 전공의 중 '25년도 1~2월 중 진행하는 모집 과정을 통해 사직 전 수련 중이던 병원·전문과목에 복귀하는 경우

2. 대상자 규모는?

- '24년 3월 전공의 임용대상자 13,531명 중 사직(임용포기)자 12,187명(90.1%, 1.8.)
- 인턴 사직(임용포기)자 2,967명, 레지던트 사직(임용포기)자 9,220명

3. 모집 규모는?

- 해당 연차별 정원 중 결원 범위 내에서 모집
 - * 구체적인 모집규모는 병원(기관)에 별도 안내 예정
- 단, 레지던트 1년차 1차 모집('24.12) 및 현 근무자 승급 등으로 인해 정원 초과 합격자 발생 시 초과 인원만큼 추가 인정("사후 정원" 적용)하여 복귀를 원하는 사직자들의 복귀 기회를 최대한 보장

4. 모집 일정은?

구 분	레지던트 1년차/상급연차 일정	인턴 일정
공고	'25.1.14(화)	'25.2.3(월)
병원(기관)별 원서교부 및 접수	'25.1.15(수) ~ 1.17(금) 17:00까지	'25.2.3(월) ~ 2.4(화) 17:00
면접(실기)시험	'25.1.20(월) ~ 1.22(수)	'25.2.5(수) ~ 2.6(목)
합격자 발표	'25.1.23(목)	'25.2.7(금)

- * 결원 발생 시 2월 중 추가모집 예정, 단 추가모집 대상·자격·특례 등은 별도 안내 예정이며, 추가모집에서는 병무 일정상 입영특례 불가능

5. 수련특례 적용 근거는?

- 「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(이하 수련규정)」 제5조제7항, 「수련규정 시행규칙」 제18조의2, 전공의 임용시험 지침